

의안번호	2214202
의 퇴 인	전현희 의원
회 답 일	2025.11.27.
추 계 번호	25B59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노동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200만원, 2030년 9,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5,800만원(연평균 9,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동인권의 날(안 제14조의2)	92	92	92	92	92	458	92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념일 관련 사업비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행사 개최 여부와 행사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의2 (노동인권의 날) 신설	노동자 권리를 위한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근로기준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함(제1항)	의무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4조의2 (노동인권의 날) 신설	○	- 비용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증진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 다만,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노동인권 증진 등에 대한 사업 추진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본 추계서는 개정안에 따라 노동인권의 날을 지정하고, 노동인권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고용노동부 소관 기념일 관련 사업비의 평균값(9,2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표 4] 고용노동부 소관 기념일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념일	근거법령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예산	2026 예산안
사회적기업의 날 (1037-311)	「사회적기업육성법」§16의2	153	153	100	100	100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1331-30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6	107	107	100	100	100
근로자의 날 (2031-30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	73	73	73	73	66
숙련기술인의 날 (1134-317)	「숙련기술장려법」§18의2	—	—	100	100	100
평균						92

자료: 고용노동부

- 따라서 노동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는 연 9,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추계기간 동안 행사 비용은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노동인권의 날(안 제14조의2)	92	92	92	92	92	458

주: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념일 관련 사업비의 평균값을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행사 개최 여부와 행사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고용노동부 소관 기념일 관련 사업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행사 개최 여부와 내용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